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4일, 서미화의원 등 47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미화 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서미화 의원)

가.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

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 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둔(안 제3조 및 제7조).

다. 지역장애인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각 법령에 따른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류 사회 내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정책의 기획·추진,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고, 해당 정책·법령·예산 등이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 11조).

마.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38조 및 제4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권리옹호 및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연구원을 설립함(안 제4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하여 장애인 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자.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원칙, 업무 범위, 책무, 사법경찰관 파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차.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소송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카.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 유형, 장애서비스 제공량을 판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서비스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82조 및 제83조).

타.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교육권 보장, 참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 권리 보장, 방송 접근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체육활동 권리 보장, 재생산 권리 보장, 고령장애인 지원, 돌봄·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다양한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4조부터 제106조까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제정안은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장애인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닌 동정·시혜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장애 개념의 확대,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개편, 장애인지예산 및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국가장애연구원,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장애인 권리침해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옹호센터, 단체소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첫째, 제정안은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바, 복지증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라는 개념의 중요 요소로 인정한 정신적·신체적 손상

부분은 장애 개념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 개념의 확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이를 장애인의 권리침해 및 인권침해, 확대 관련 범죄, 차별행위 등에 관한 신고의무, 취업제한, 벌칙 적용 등의 조항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법 집행 시 명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둘째,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엄성, 평등 실현, 고유성, 자기결정권, 참정권 등 각종 권리를 조항별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책 마련 의무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는 이미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 규범인 법률에서 다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며, 일부 추상적 개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정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에서는 정의 조항에서 ‘탈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기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3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4항, 제87조제1항 등에서 재차 사용하고 있는데,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점과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에 관한 첨예한 찬·반 대립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제정안에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적절한 경제생활과 주거생활 보장, 노동권,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 장애인과 미래세대의 장애인이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범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다섯째, 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대한 조정,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예산, 단체소송 등의 제도 및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신설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체·보완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장애인위원회, 국가장애연구원,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등에 관해서는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여부,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 가능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특히,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구는 정부 부처의 기능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등 구성원을 장애인 과반수로 하는 부분은 국가의 정책 결정권을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형태로 확대될 경우에는 정부의 기능이 재구성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

음. 예컨대, 노인 정책, 실업자 정책, 근로자 정책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구성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5.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